

주주님께

## 제8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오며,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8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층 대회의실 (여의도동, 포스트타워)

###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83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영업보고, 감사위원의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별첨 참조)

○ 제 1 호 의안 : 의안 순서의 건(주주제안)

○ 제 2 호 의안 : 제 83 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1 호 의안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외) 승인

- 제 2-2 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 1 주당 현금배당금 1,000 원(주주제안) / 250 원(이사회안)

○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표결 방법의 건

○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1 인 선임의 건

- 제 5-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김선웅(주주제안)

- 제 5-2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김병호(이사회안) / 김선웅(주주제안)

○ 제 6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 억원(주주제안) / 15 억원(이사회안)

※ 본 주주총회 의안은 주주제안 의안에 따라 안건 의결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순서의 개요는 아래와 같고 상세한 사항은 별첨 안전참고자료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소집통지서,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고해주시시오.

※ 제 1 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제 3 호 의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상정되며, 제 4 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 상기 제 3 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 3 호 의안 정관 개정안 중 제 41 조의 2 제 2 항이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제 4 호 의안 및 제 5-1 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 상기 제 3 호 의안이 부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제 3 호 의안 정관 개정안 중 제 41 조의 2 제 2 항이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는 경우)되고, ㄱ) 제 4 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 제 5-1 호 의안이, ㄴ) 제 4 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 5-2 호 의안 중 주주제안 안건(후보자 김선웅 선임안)이 각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의 직접 참석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면투표 등)를 권고 드립니다.

※ 코로나 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직접참석 : 주총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참석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29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관으로 처리

#####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주주님은 동봉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당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당사가 부담하며 2021. 3. 29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2021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9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eUSU: Holdings



대표이사 송 영 규

명의개서대리인 (주)하나은행장 지 성 규

# 제83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별 참고사항

## ○ 제 1 호 의안 : 의안 순서의 건(주주제안)

주주제안자는 본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순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주주제안자가 제시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진행함.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또는 감사 선임의 건을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관변경의 건(그 외의 주주제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관변경은 제외), 제 83 기(2020. 1. 1 ~ 2020.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는 첫번째 의안으로 상정한다.</li><li>•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또는 감사 선임에 관하여 주주제안자가 제안한 의안을 이사회가 상정한 의안보다 먼저 상정한다.</li></ul>

### ※기타 참고사항

제 1 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제 3 호 의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상정되며, 제 4 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 ○ 제2호 의안 : 제83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1 호 의안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외) 승인
  - 제 2-2 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 \* 1 주당 현금배당금 1,000 원(주주제안) / 250 원(이사회안)

※첨부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첨부 정관 일부 변경 신규조문 대비표 참조

### ※ 기타 참고사항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본 의안 정관 개정안 중 제41조의2 제2항이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제4호 의안 및 제5-1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본 의안이 부결(혹은 수정 가결되는 경우에도 본 의안 정관 개정안 중 제41조의2 제2항이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는 경우)되고, ㄱ) 제4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 제5-1호 의안이, ㄴ) 제4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5-2호 의안 중 주주제안 안건(후보자 김선웅 선임안)이 각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표결 방법의 건

주주제안자는 동일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추천하면서 의안 상정순서를 제안하였음. 한편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추천하였음. 양자의 자격이 모두 있는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지 아니면 사외이사로 선임할지 여부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해당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의 의결권 제한이 달라짐. 또한, 의안 상정순서 및 표결방법에 대하여도 주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가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사외이사로 정하고, 주주제안자가 추천한 후보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일괄상정하기 위하여 위 안건을 상정함.

### ※ 기타 참고사항

ㄱ)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 제 5-1 호 의안이, ㄴ) 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제 5-2 호 의안 중 주주제안 안건(후보자 김선웅 선임안)이 각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1인 선임의 건

- 제 5-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최근 10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천인)
		기간	내용			
김선웅 (기타비상무 이사 후보)	'71.12.04	'21.01 ~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분리선출	없음	없음 (주주제안)
		'16.12 ~ '19.12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12.10 ~ '16.11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			
		'02.02 ~ '12.10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00.02 ~ '01.09	금융감독원 법무실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 제 5-2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최근 10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천인)
		기간	내용			
김병호 (사외이사 후보)	'61.09.24	'20.03 ~ 현재	Int' Finance Corp 수석고문	분리선출	없음	없음 (이사회)
		'19.03 ~ 현재	SK(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18.03 ~ '19.03	(주)하나금융지주 자문위원			
		'15.09 ~ '18.03	(주)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5.02 ~ '15.09	(주)하나은행 은행장			
		'14.11 ~ '15.02	(주)하나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09.07 ~ '14.11	(주)하나은행 부행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최근 10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천인)
		기간	내용			
김선웅 (사외이사 후보)	'71.12.04	'21.01 ~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분리선출	없음	없음 (주주제안)
		'16.12 ~ '19.12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12.10 ~ '16.11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			
		'02.02 ~ '12.10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00.02 ~ '01.09	금융감독원 법무실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020년도에 승인된 보수한도액 : 20억원
- ▷ 2020년도에 집행된 보수액 : 4억 9천 7백만원
- ▷ 2021년도에 상정된 보수한도액(안) : 주주제안 5억원 / 이사회안 15억원

○ 첨부 : 정관 일부 변경 신규조건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7 조의 2(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 ⑥ (생략)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이사회가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의 2(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이사회가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삭제>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 350 조 제 3 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준용 규정 삭제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략)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삭제> 제 9 항 내용은 제 8 항으로 이동	상동
제 10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동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생략)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중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업무가 사라짐. 이를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에 맞추어 규정 정비
<신설>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 31 조 제 4 항에 의거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신 주주의 파악을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이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준일)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상법상 기준일을 결산기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주총 전 사업보고서 공시 규제에 따라 결산기일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규정(이에 따라서 3월 내 정기주주총회 개최 필요)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정기주주총회를 포함한 주주총회의결권 행사 기준일 전반을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 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는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 350 조 제 3 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준용 규정 삭제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배당기산일에 관한

현행	개정(안)	비고
① ~ ⑤ (생략) ⑥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상법 제 350 조 제 3 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준용 규정 삭제
제 17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① (생략) ② <u>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u>	제 17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제 13 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u>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일 규정에 맞추어 그 소집시기에 관한 규정 정비
제 41 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u>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u> ③ <u>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④ <u>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⑤ <u>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⑥ <u>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u> ⑦ <u>사외이사의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u>	제 41 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u> ③ <u>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 ④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 3 항 후문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에는 이 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제 30 조 제 2 항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u> ⑤ <u>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u> ⑥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2021년 정기주총부터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사외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정관 제 30 조 제 2 항은 분리선출 방식으로 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제 47 조(이익의 배당) ① ~ ② (생략) ③ <u>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	제 47 조(이익의 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 1 항의 배당은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정해진 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	상법상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정관 제 13 조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별도로 정함)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정비
제 47 조의 2(분기배당) ① ~ ③ (생략) ④ <u>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제 47 조의 2(분기배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 350 조 제 3 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부 칙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83기 (2020년)	제82기 (2019년)
<b>유 동 자 산</b>	<b>103,918</b>	<b>7,258</b>
현 금 성 자 산	9,477	1,014
단 기 금 융 자 산	94,067	5,78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8	378
기 타 유 동 자 산	26	78
<b>매 각 예 정 자 산</b>	<b>-</b>	<b>215,834</b>
<b>비 유 동 자 산</b>	<b>195,427</b>	<b>59,600</b>
장 기 금 융 자 산	4,218	2,777
중속기업 투자 자산	44,486	44,635
유 형 자 산	153	8,090
투 자 부 동 산	144,845	-
기타 비유동 자산	1,725	4,098
<b>자 산 총 계</b>	<b>299,345</b>	<b>282,692</b>
<b>유 동 부 채</b>	<b>36,957</b>	<b>96,936</b>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08	900
임 대 보 증 금	5,355	-
차 입 금	-	95,000
당기 법인세 부채	25,429	95
기 타 유 동 부 채	5,565	941
<b>매각예정자산관련 부채</b>	<b>-</b>	<b>9,473</b>
<b>비 유 동 부 채</b>	<b>1,558</b>	<b>326</b>
확 정 급 여 부 채	708	312
이연 법인세 부채	805	-
기타 비유동 부채	45	14
<b>부 채 총 계</b>	<b>38,515</b>	<b>106,735</b>
<b>자 본 금</b>	<b>65,105</b>	<b>65,105</b>
자 본 잉 여 금	39,677	39,677
자 본 조 정	△20,388	△20,388
기 타 자 본	-	△350
이 익 잉 여 금	176,436	△16,035
매각예정자산관련 자본	-	107,948
<b>자 본 총 계</b>	<b>260,830</b>	<b>175,957</b>
<b>부채와 자본 총계</b>	<b>299,345</b>	<b>282,692</b>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과 목	제83기 (2020년)	제82기 (2019년)
<b>유 동 자 산</b>	<b>3,125</b>	<b>2,286</b>
현 금 성 자 산	1,333	1,224
단 기 금 융 자 산	1,042	17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74	814
당기 법인세 자 산	21	19
기 타 유 동 자 산	55	54
<b>매 각 예 정 자 산</b>	<b>-</b>	<b>2,158</b>
<b>비 유 동 자 산</b>	<b>1,858</b>	<b>776</b>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	199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61	56
유 형 자 산	60	157
투 자 부 동 산	1,448	-
무 형 자 산	88	166
기타 비유동 자산	186	198
<b>자 산 총 계</b>	<b>4,983</b>	<b>5,220</b>
<b>유 동 부 채</b>	<b>992</b>	<b>1,596</b>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49	411
차 입 금	69	1,076
당기 법인세 부채	268	20
기 타 유 동 부 채	206	89
<b>매각예정자산관련 부채</b>	<b>-</b>	<b>92</b>
<b>비 유 동 부 채</b>	<b>108</b>	<b>246</b>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
확 정 급 여 부 채	-	38
이연 법인세 부채	88	150
기타 비유동 부채	20	20
<b>부 채 총 계</b>	<b>1,100</b>	<b>1,934</b>
<b>자 본 금</b>	<b>651</b>	<b>651</b>
자 본 잉 여 금	410	410
자 본 조 정	△207	△207
기 타 자 본	△12	△4
이 익 잉 여 금	2,216	337
매각예정자산관련 자본	-	1,079
비지배 주 주 지 분	825	1,020
<b>자 본 총 계</b>	<b>3,883</b>	<b>3,286</b>
<b>부채와 자본 총계</b>	<b>4,983</b>	<b>5,220</b>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83기 (2020년)	제82기 (2019년)
영 업 수 익	13,877	14,396
영 업 비 용	10,892	9,471
<b>영 업 이 익</b>	<b>2,985</b>	<b>4,925</b>
금 융 수 익	547	268
금 융 비 용	2,796	3,302
기타 영업외손익	112,909	△41
<b>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b>	<b>113,645</b>	<b>1,850</b>
법인세비용(△수익)	29,022	△16,559
<b>당 기 순 이 익</b>	<b>84,623</b>	<b>18,409</b>
기타포괄이익(△손실)	250	△511
<b>총 포 괄 이 익</b>	<b>84,873</b>	<b>17,898</b>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	제83기 (2020년)	제82기 (2019년)
영 업 수 익	3,348	3,661
영 업 비 용	3,500	3,739
<b>영 업 이 익(△손실)</b>	<b>△152</b>	<b>△78</b>
금 융 수 익	89	113
금 융 비 용	167	68
관계기업지분법손익	10	△6
기타영업외손익	1,097	△36
<b>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b>	<b>877</b>	<b>△75</b>
법인세비용(△수익)	248	△50
<b>당기순이익(△손실)</b>	<b>629</b>	<b>△25</b>
기타포괄이익(△손실)	△8	4
<b>총포괄이익(△손실)</b>	<b>621</b>	<b>△21</b>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83기(2020년)		제82기(2019년)	
I. 미처분 이익 잉여금		176,125		△16,347
-전기 이월 미처리결손금	△16,347		△34,283	
-재평가잉여금 대체	107,948		-	
-당 기 순 이 익	84,623		18,40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9		473	
II. 이익 잉여금 처분액		△6,870		-
-이 익 준 비 금	△625		-	
-현 금 배 당 금	△6,245		-	
III.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결손금)		169,256		△16,347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매각예정자산관련자본	합계
I. 2020년1월1일(기초)	65,105	39,677	△20,388	△350	△16,035	107,948	175,957
-당 기 순 이 익	-	-	-	-	84,623	-	84,623
-재평가잉여금 대체	-	-	-	-	107,948	△107,948	-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	-	-	350	△100	-	250
II. 2020년12월31일(기말)	65,105	39,677	△20,388	-	176,436	-	260,830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 억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매각예정자산관련자본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합계
I. 2020년1월1일(기초)	651	410	△207	△4	337	1,079	2,266	1,020	3,286
-당 기 순 이 익	-	-	-	-	800	-	800	△171	629
-재평가잉여금 대체	-	-	-	-	1,079	△1,079	-	-	-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	-	-	△8	-	-	△8	△24	△32
II. 2020년12월31일(기말)	651	410	△207	△12	2,216	-	3,058	825	3,883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83기(2020년)	제82기(2019년)
<b>영업활동 현금흐름</b>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5,401	6,326
- 법인세 환급(△납부)	△150	26
<b>계</b>	<b>5,251</b>	<b>6,352</b>
<b>투자활동 현금흐름</b>		
- 배당의 수취	1,605	401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86,311	855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3,086	△848
-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189,113	△7,494
- 이자의 수취 등	△301	2,191
<b>계</b>	<b>101,020</b>	<b>△4,895</b>
<b>재무활동 현금흐름</b>		
- 차입금의 증가(△상환)	△95,000	-
- 이자의 지급	△2,769	△3,294
- 리스료의 지급 등	△40	△133
<b>계</b>	<b>△97,809</b>	<b>△3,161</b>
<b>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b>	<b>8,462</b>	<b>△1,704</b>
<b>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b>	<b>1,014</b>	<b>2,718</b>
<b>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b>	<b>9,476</b>	<b>1,014</b>

(‘△’는 부(-)의 수치임)

○ 첨부 : 요약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구 분	제83기(2020년)	제82기(2019년)
<b>영업활동 현금흐름</b>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277	362
- 법인세 환급(△납부)	△20	△46
<b>계</b>	<b>257</b>	<b>316</b>
<b>투자활동 현금흐름</b>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848	22
-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3,257	△84
- 투자부동산의 처분(△취득)	△1,376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등	△17	15
<b>계</b>	<b>1,016</b>	<b>△47</b>
<b>재무활동 현금흐름</b>		
- 차입금의 증가(△상환)	△1,003	△3
- 이자의 지급	△34	△44
- 배당금의 지급	△24	△6
- 리스부채 증가(△상환) 등	△43	△38
<b>계</b>	<b>△1,104</b>	<b>△91</b>
<b>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b>	<b>169</b>	<b>178</b>
<b>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b>	<b>1,224</b>	<b>1,039</b>
- 환율변동효과	△60	7
<b>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b>	<b>1,333</b>	<b>1,224</b>

(‘△’는 부(-)의 수치임)